



미래 50년을 준비하는  
새로운 전통의 시작!



# 2025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[변경]

2024. 5.

[2023. 4. 28. 최초 공고 이후 변경 사항]

▶ [1쪽] 입학정원 및 모집단위별 모집인원



국립공주대학교  
Kongju National University

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,  
본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은 한국대학교육협회의 심의 및 승인 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 목 차

1.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.....	1
2. 모집구분 .....	3
3. 입학정원의 2%이내 모집 전형 .....	4
4. 입학정원 제한 없는 전형 .....	6
4-1.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자 .....	6
4-2. 북한이탈주민 .....	7
4-3.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.....	7
5.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.....	8
6. 전형 방법 및 선발 원칙 .....	8

# 1.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

(단위: 명)

캠퍼스	대학	계열	모집단위	입학정원	모집인원		비고	
					입학정원의 2%이내 전형	전교육과정 이수자, 북한이탈주민,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		
공주 캠퍼스	인문사회 과학대학	인문· 사회계	영어영문학과	24	2명 이내	제한 없음		
			중어중문학과	27	2명 이내	"		
			불어불문학과	18	1명 이내	"		
			독어독문학과	18	1명 이내	"		
			사학과	18	1명 이내	"		
			지리학과	18	1명 이내	"		
			경제통상학부	39	3명 이내	"	경제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	
			경영학과	22	2명 이내	"		
			관광경영학과	26	2명 이내	"		
			관광&영어통역융합학과	26	2명 이내	"		
			행정학과	25	2명 이내	"		
			법학과	24	2명 이내	"		
			사회복지학과	24	2명 이내	"		
	자연과학 대학	자연계	데이터정보물리학과	26	2명 이내	"		
			응용수학과	25	2명 이내	"		
			화학과	25	2명 이내	"		
			생명과학과	27	2명 이내	"		
			지질환경과학과	24	2명 이내	"		
			대기과학과	24	2명 이내	"		
			문화재보존과학과	15	1명 이내	"		
			의류상품학과	15	1명 이내	"		
			예·체능계	생활체육지도학과	17	1명 이내	"	
			간호보건 대학	자연계	간호학과	64	6명 이내	"
	보건행정학과	36			3명 이내	"		
	응급구조학과	26			2명 이내	"		
	의료정보학과	27			2명 이내	"		
	예술대학	예·체능계	게임디자인학과	31	3명 이내	"		
			가구리빙디자인학과	17	1명 이내	"		
			도자문화융합디자인학과	17	1명 이내	"		

캠퍼스	대학	계열	모집단위	입학정원	모집인원		비고
					입학정원의 2%이내 전형	전교육과정 이수자, 북한이탈주민,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	
			주얼리·금속디자인학과	17	1명 이내	"	
			만화애니메이션학부	35	3명 이내	"	카툰코믹스전공 애니메이션전공
			무용학과	22	2명 이내	"	
			영상학과	31	3명 이내	"	
			본부소속	자연계	국제학부	20	2명 이내
천안 캠퍼스	공과대학	자연계	전기전자제어공학부	97	9명 이내	"	전기공학전공 제어계측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반도체정보공학전공
			정보통신공학과	20	2명 이내	"	
			스마트정보기술공학과	19	1명 이내	"	
			컴퓨터공학과	30	3명 이내	"	
			소프트웨어학과	29	2명 이내	"	
			기계자동차공학부	84	8명 이내	"	기계공학전공 기계설계공학전공 기계시스템공학전공
			미래자동차공학과	20	2명 이내	"	
			스마트인프라공학과	44	4명 이내	"	
			도시·교통공학과	17	1명 이내	"	
			건축학과	21	2명 이내	"	(5년제)
			그린스마트건축공학과	21	2명 이내	"	
			화학공학부	45	4명 이내	"	화학공학전공 공업화학전공
			신소재공학부	48	4명 이내	"	나노재료공학전공 고분자공학전공 금속재료공학전공
			디자인컨버전스학과	37	3명 이내	"	
			환경공학과	21	2명 이내	"	
			산업공학과	19	1명 이내	"	
			광공학과	18	1명 이내	"	
			디지털융합금형공학과	13	1명 이내	"	
			지능형모빌리티공학과	25	2명 이내	"	
			본부소속	자연계	인공지능학부	35	3명 이내
예산	산업과학	인문·사회	지역사회개발학과	12	1명 이내	"	

캠퍼스	대학	계열	모집단위	입학정원	모집인원		비고
					입학정원의 2%이내 전형	전 교육과정 이수자, 북한이탈주민,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	
캠퍼스	대학	계	부동산학과	12	1명 이내	"	
			산업유통학과	12	1명 이내	"	
		자연계	식물자원학과	20	2명 이내	"	
			원예학과	21	2명 이내	"	
			동물자원학과	21	2명 이내	"	
			지역건설공학과	16	1명 이내	"	
			스마트팜공학과	16	1명 이내	"	
			산림과학과	21	2명 이내	"	
			조경학과	16	1명 이내	"	
			식품영양학과	17	1명 이내	"	
			외식상품학과	12	1명 이내	"	
			식품공학과	15	1명 이내	"	
			특수동물학과	17	1명 이내	"	
			수산생명의학과	25	2명 이내	"	
			합 계				1,741

- ※ 입학정원의 2%이내 모집 전형은 당해학년도 전체 입학정원[교육부 고시-"첨단(신기술)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"에 따른 편입학여석 활용 첨단학과 입학정원 제외]의 2%이내(54명)이며, 합격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. 전체 합격자가 최대 선발가능인원(54명)을 초과할 경우, 모집단위별로 모집인원을 조정함
- ※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교육부의 2025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임
- ※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자 전형, 북한이탈주민 전형,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정원 제한없이 모집함
- ※ 사범대학, 자율전공학부,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학과는 모집하지 않음

## 2. 모집구분 및 지원자격(법령상 지원자격)

<b>입학정원 2%이내 모집 (모집단위별 10% 이내)</b>	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제29조제2항제2호 - 재외국민과 외국인(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 국민 및 외국인 제외)	• 국외근무/사업/영업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자의 자녀
<b>입학정원 제한 없는 모집</b>	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-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-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, 외국인,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	• 북한이탈주민 •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•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 재외국민 •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 외국인 •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 후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

### 3. 입학정원의 2%이내 모집 전형

#### 가. 지원자격(기본 학력조건)

초·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(예정)한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에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
1. 외국소재 고교 졸업(예정)자
2.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(예정)한 자

#### 나. 지원자격 세부인정 기준

- 우리나라 학제(12학년)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- '재외국민등록부등본', '출입국사실증명서', '국외근무 확인서류', '재학기간 증명서류'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재외국민 특별전형 국외체류기간 인정함

구분	내용
국외재학기간	·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·고교 과정 3년 이상
국외체류기간	· 학생: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/4이상 · 부모: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/3이상
국외근무자 재직기간	· 역년으로 통산 3년(1,095일) 이상의 국외근무/사업/영업

#### □ 고등학교 졸업 자격인정 기준시점

- 우리대학에 입학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개시 전일까지. 다만,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(일본 등)에 한하여 1개월의 재학 예정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

#### □ 외국학교 인정기준

-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만을 인정함
-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
- 초·중·고 교육과정의 재학기간만을 인정하며, ESL(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) 과정 등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
- 검정고시, 홈스쿨링,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

#### □ 국외근무자

- 역년으로 통산 3년(1,095일) 이상의 국외근무/사업/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

#### □ 국외근무자의 자녀

-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(1,095일)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/사업/영업하는 기간 동안,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(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)을 포함하여 중·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

#### □ **국외재학기간**

- 국외 소재 학교 재학기간은 보호자의 국외근무기간과 중첩되는 기간만을 인정함
- 학생이 학기 개시 일부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
  - 학기 개시 일부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(약 365일)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. 단,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
-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일부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
  -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(약365일)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
- 우리나라 학제(12년)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,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(6개월)에 한하여 인정함(총 23학기, 11년 6개월 이상 충족)
-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 제도가 허용된 경우, 초·중·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
(전·편입학 시 월반은 미 인정)
- 동일 학년(학기)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
  - 단,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(복수 발생 인정 가능)
    -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
    -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
- (※ 단,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, 부정·편법·악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)

#### □ **국외체류일수 조건**

- 학생이 학기 개시일 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
  - 학기 개시 일부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(약 365일)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/4이상을, 국외근무/사업/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/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
-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일부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
  -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(약 365일)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/4이상을, 국외근무/사업/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/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
- 체류일수 산정 시, 소수점 절사

#### □ **국외 근무자 등의 근무 형식**

- 국외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(교육·연수·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)

#### □ **부모의 근무기간, 체류기간 인정 기준**

- 역년(Calendar Year)과 학년(Academic Year)을 기준으로 하며, 반드시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
  - 국외 체류기간: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 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
  - 국외 근무기간: 증명서상(재학 및 경력증명서) 국외근무자로 재직/사업/영업하는 기간
-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에 관계없이 부모 중 1인을 기준으로 하며, 이혼일 이전까지의 자격 조건은 충족해야 함

#### □ **코로나-19 관련 사항**

- 코로나-19로 인해 온라인 수업 진행시 체류국가와 관계없이 재학기간 인정
  - 단, 해당 기간 국내 체류 시 국외 체류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

## 4. 입학정원 제한 없는 모집 전형

### 4-1.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자

#### 가. 지원자격(기본 학력조건)

국외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에 상응하는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

#### 나. 지원자격 세부인정 기준

##### □ 고등학교 졸업 자격인정 기준시점

- 우리대학에 입학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개시 전일까지. 다만,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(일본 등)에 한하여 1개월의 재학 예정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

##### □ 외국학교 인정기준

-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
- 초·중·고 교육과정의 재학기간만을 인정하며, ESL(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) 과정 등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
- 검정고시, 홈스쿨링,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

##### □ 재학기간의 기준

-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
-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·중등학교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
  -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·중·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,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
  -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. 단,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
-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·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·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(6개월)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
-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 제도가 허용된 경우, 초·중·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(전·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)
- 동일 학년(학기)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
- 단,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(복수 발생 인정 가능)
  -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
  -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(※ 단,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, 부정·편법·약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)
-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,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

## 다. 어학 자격기준(외국인인 경우)

- 모든 모집단위: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 이상 취득한 자,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의 정규 한국어 과정 3급 이상 수료자
- 국제학부(한국어능력시험 대신 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 가능): TOEFL 530(CBT 197, iBT 71, PBT 530), IELTS 5.5, CEFR B2, New TEPS 326, TOEIC 700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 공인민간 영어능력시험
- ※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은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증빙 서류(졸업증명서 등)로 영어 능력시험 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입학 가능함

## 4-2. 북한이탈주민

### 가. 지원자격(기본 학력조건)

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·외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 학력을 취득한 자

### 나. 지원자격 세부인정 기준

#### □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

-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에 따라 도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
- 국내·외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거 동등 이상 학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

## 4-3.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

### 가. 지원자격(기본 학력조건)

국내·외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거 동등 이상 학력을 취득한 자

※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(복수국적자 제외)

(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)

### 나. 지원자격 세부인정 기준

#### □ 재학 인정

- 외국 소재 학교 또는 국내 소재 학교(외국인학교)를 불문하고 초·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요건 부여

## 다. 어학 자격기준

- 모든 모집단위: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 이상 취득한 자,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의 정규 한국어 과정 3급 이상 수료자
  - ※ 추가 어학 자격기준은 추후 모집요강에 공지함
- 국제학부(한국어능력시험 대신 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 가능): TOEFL 530(CBT 197, iBT 71, PBT 530), IELTS 5.5, CEFR B2, New TEPS 326, TOEIC 700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 공인민간 영어능력시험
  - ※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은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증빙 서류(졸업증명서 등)로 영어 능력시험 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입학 가능함

## 5.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

- 가.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
- 나. 국외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,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
  - (※ 단,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 발급 서류의 경우 학교장 직인으로 갈음함)
- 다. 국외에서 발급받은 서류 중 부득이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사본 문서 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 (또는 영사확인) 절차가 필수이며 공증 증명서 및 아포스티유 증명서(또는 영사확인 증명서)는 반드시 원본 서류이어야 함
- 라. 입학일 전일까지 포함해야 『지원 자격』이 충족되는 경우, 합격 후 지원자 졸업증명서 및 보호자의 재직(경력)증명서,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전형에 따른 지원 자격 서류를 입학 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
  - (※ 국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 혹은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로 제출)
- 마. 본 대학에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지원 자격 확인 및 외국인 합격 후 비자발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## 6. 전형 방법 및 선발 원칙

### 가. 전형 방법

구분	모집단위	서류 자격심사	전형요소 (면접)	합계
전 전형	전 모집단위 (사범계열 제외)	지원 자격 적격 여부 심사(합/불)	100점(100%)	100점

※ 수험생은 면접고사 시 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

### 나. 선발 원칙

- 1) 모집단위별 선발 가능인원의 범위에서 총점 순위에 따라 적정 인원을 합격자로 선발함
- 2) 지원자격 미달자, 면접고사 결시자, 면접 점수 평균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함
- 3) 소수점 이하의 성적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처리함
- 4) 본 시행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